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17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발의자: 장호섭 의원 외 6명(박정환, 손범구, 박종길, 남현주, 정순옥, 김정희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(2024. 12. 17.)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개정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」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, 채용응시요건 개선, 용어 정비 등 인사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(안 제8조제3항, 안 별지 제1호서식)
 -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
- 시간선택제임기제·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개선(안 별표 5의3)
 - 고등학교·전문대학 졸업자 → 고등학교·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
- 응시원서 상의 ‘탈모’ 용어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, 안 별지 제2호서식)
 - ‘탈모’ 라는 용어 대신 ‘모자 등을 쓰지 않은’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
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 ~ 11. 17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류순자)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「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」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8조제3항은 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’ 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두었음.
 - 안 제17조제5항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서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음.
 - 안 별표 5의3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적임기제 공무원의 학력 자격기준을 ‘고등학교·전문대학 졸업자’에서 ‘고등학교·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’으로 변경하였음.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,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적임기제 공무원의 학력 자격기준 완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